# 윤리규범

2024. 11. 26.

(주)에스엠브랜드마케팅

# [목 차]

## 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제2조 (적용)

제3조 (제정 및 개정)

## 제2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

제4조 (평등한 대우)

제5조 (정보제공)

## 제3장 고객에 대한 자세

제6조 (고객존중)

제7조 (고객보호)

## 제4장 사업파트너 등에 대한 자세

제8조 (공정경쟁)

제9조 (공정거래)

## 제5장 사회에 대한 책임

제10조 (법규의 준수)

제11조 (사회발전에 기여)

제12조 (환경보호)

##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
제13조 (공정한 대우)

제14조 (근무환경)

## 제7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제15조 (업무수행)

제16조 (회사재산의 보호)

제17조 (이해상충행위 금지)

제18조 (내부정보이용 금지)

제19조 (정치관여 제한)

제20조 (성희롱 등의 금지)

제21조 (금품 등의 수수 금지)

제22조 (위반 시의 처리)

## 부 칙

## 제1장 총 칙

#### 제1조 (목적)

본 규범은 윤리실천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,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 (적용)

- ① 본 규범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.
- ② 본 규범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본 규범에 부합하여야 하며,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본 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

## 제3조 (제정 및 개정)

본 규범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## 제2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

## 제4조 (평등한 대우)

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

#### 제5조 (정보제공)

회사는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의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
## 제3장 고객에 대한 자세

## 제6조 (고객존중)

회사는 고객의 입장을 적극 참고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, 과대 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.

## 제7조 (고객보호)

회사는 고객의 정당한 이익 및 고객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며,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
## 제4장 사업파트너 등에 대한 자세

## 제8조 (공정경쟁)

회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, 다른 사업자들과 정당하게 경쟁한다.

## 제9조 (공정거래)

- ① 회사는 사업파트너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- ② 회사는 사업파트너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

아니한다.

## 제5장 사회에 대한 책임

## 제10조 (법규의 준수)

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지역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,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.

## 제11조 (사회발전에 기여)

회사는 고용 창출, 조세의 성실한 납부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.

## 제12조 (환경보호)

회사는 각종 에너지와 물자를 절약하고, 자연보호 및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.

##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
#### 제13조 (공정한 대우)

- 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,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 및 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평가 및 보상한다.

# 제14조 (근무환경)

-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개인으로서의 기본권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, 임직원이 자유롭게 회사에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
## 제7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#### 제15조 (업무수행)

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이해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,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.

#### 제16조 (회사재산의 보호)

임직원은 회사의 유/무형 자산,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며, 이를 전직 또는 개인사업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17조 (이해상충행위 금지)

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, 회사와 부서 또는 개인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
#### 제18조 (내부정보이용 금지)

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직/간접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하며,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익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19조 (정치관여 제한)

- ① 임직원의 참정권 및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,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하며, 또한 회사의 조직,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20조 (성희롱 등의 금지)

임직원은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, 기타 건전한 기업문화 및 동료관계를 해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21조 (금품 등의 수수 금지)

①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기타 유/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, 또한 제공받지 아니한다. ②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며, 또한 제공받지 아니한다.

#### 제22조 (위반 시의 처리)

- ① 임직원은 본 규범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이를 준법지원조직 또는 인사부서에 신고하며, 이러한 신고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신고자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신고자는 신고 사실을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며, 신고자가 스스로 본인이 관련된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본 규범의 위반행위를 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효과 및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.

부 칙

본 규범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